

계 충북10-20230208-0009-0 호

도축검사증명서

1. 가 축 의 종 류 : 돼지

2. 두 수 및 이 력 번 호 (소, 돼지, 닭, 오리만 해당합니다) : 99 (170087001112)

3. 중 량 : 지육 9121 kg, 내장 등 기타 1386 kg

4. 각 업 장 명 : (주)팜스코

5. 검 인 번 호 : 충북10

6. 도 축 일 : 2023년 02월 08일

7. 도 축 의 리 인 : 주소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575-1

성명 김희상 외리업소 (주)팜스코

8. 안전관리인증농장(HACCP)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 : [] 예, [] 아부

9. 수입소의 경우

- 수출 국가명 :

-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도착일까지 6개월 경과여부 :

10. 검사불합격 사유의 차분 : 폐기(15 kg), 사용 외의 용도전환(0 kg)

축산물 위생관리법, 제11조 제1항·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 2023년 02월 08일

검사관 소 속 :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
홍성축산물검사소

성 명 : 강호진 (서인)

(수의사 면허번호 : 9787)

발급번호 : 0507-1528

축산물 (돼지) 등급판정확인서



*축산법,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23년 02월 09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 : 충북지원

성 명 : 이수홍



신청인	성명	김희상, 김홍국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1298130202
	업소명	(주)팜스코	업태유형	
도축장	주소	경기도 안성시 제2공단4길 33		
	업체명	(주)팜스코	등급판정일자	2023년 02월 08일
소재지		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54		

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
110034300363(752)	1	170087001112(1007)	1	170087001112(1038)	1
110034300363(757)	1	170087001112(1009)	1	170087001112(1039)	1
110034300363(758)	1	170087001112(1010)	1	170087001112(1040)	1
110034300363(759)	1	170087001112(1011)	1	170087001112(1041)	1
110034300363(765)	1	170087001112(1013)	1	170087001112(1043)	1
110034300363(771)	1	170087001112(1018)	1	170087001112(1044)	1
130035600264(894)	1	170087001112(1020)	1	170087001112(1045)	1
130035600264(903)	1	170087001112(1023)	1	170087001112(1048)	1
140131101032(978)	1	170087001112(1026)	1	170087001112(1051)	1
140131101032(981)	1	170087001112(1028)	1	170087001112(1054)	1
140131101032(998)	1	170087001112(1031)	1	170087001112(1057)	1
140131101032(999)	1	170087001112(1034)	1	170087001112(1062)	1
140131101032(1000)	1	170087001112(1035)	1	170087001112(1067)	1
170087001112(1004)	1	170087001112(1036)	1	170087001112(1069)	1
170087001112(1006)	1	170087001112(1037)	1	170087001112(1071)	1

전체 45 두 (1+등급: 0 1등급: 45 2등급: 0 등외등급: 0)

납품내역	업태유형	납품차량	부위명	중량(kg)
	해	담	없	음



발급횟수 : 2건 발행일자 : 2023년 02월 09일

* 등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kape.or.kr) "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"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* 납품내역은 "축산법 시행규칙" 제 45조 제 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하거나 음식전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